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5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5. 14) 상정
- 제13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5. 1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 윤 준 의)

가. 제안이유

-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통·반장이 직접송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송달 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972호, 2006. 9. 1.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택 관련 재산세 적용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류 중에 반송된 서류를 직접 송달하거나, 송달불능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17조제4항)
- 가목이외의 주택(제28조제1항제3호나목)

| 과세표준 | 세 율 |
|----------------|---------------------------|
| 4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5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4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없 음 | ○ 없 음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제107호 |
| 의결일 | 2007. 5. 31 (제136회) |

제출년월일 : 2007. 5. 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반송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통·반장이 직접송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송달 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하여 당해연도에만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972호, 2006. 9. 1.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주택관련 재산세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에 규정된 서류 중에 반송된 서류를 직접 송달하거나, 송달불능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매 1건당 1,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이외의 주택

| 과세표준 | 세 율 |
|----------------|---------------------------|
| 4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5 |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1억원 초과 | 24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